

신학대학원 학칙시행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대신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의거 신학대학원(이하 “신대원”)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통합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제2조 (입학자격) 신대원에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 대학교 교원 및 직원 (조교 제외)인 자는 휴직한 후가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1. 수세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2. 국내•외 대학졸업자로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3.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4. 본 교단 소속노회에서 실시하는 목사후보생 고시에 합격하여 추천을 받은 자
5. 여학생의 경우는 당회장 추천을 받은 자

제3조 (입학절차) 입학을 원하는 자는 입학전형료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1. 입학원서
2. 노회추천서
3. 당회장추천서
4. 수세증명서
5. 대학 졸업증명서
6. 대학 성적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8. 자기소개서
9. 사진(반명한판 3장)

제4조 (입학전형) 신대원 입학전형은 학부성적 및 면접(구두)고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06.01.)

제5조 (입학특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신대원 입시위원회의 심의(서류심사 및 면접)를 거쳐 신대원 정원 외로 입학을 협의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2. 외국에서 초, 중, 고, 대학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및 재외국인

제6조 (입학등록)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 등록자는 합격을 무효로 처리한다.

제7조 (입학취소) 입학서류 중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한다.

제8조 (어학공개강좌) 신입생은 학기 개시 전에 어학공개강좌를 통하여 예비필수 과목(헬

라어)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2014.9.1.)

제3장 편입학, 재입학

제9조 (편입학자격) 편입학은 정규 신대원에서 1년 이상 이수한 자로 전적대학원 성적과 면접(구두고사)을 거친 후 편입학을 허가하며, 학기 인정은 최대 2학기 까지로 한다. 기타 편입학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인정학점) 편입학 이전에 다른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36학점까지 인정한다.

제11조 (재입학) ①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 재입학원과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는 재입학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③ 재입학 서류심사와 면접 및 필요한 전형을 거쳐 신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적 전 학점은 인정된다.

제12조 (구비서류) 재입학원 제출 시 다음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입학원서(소정양식)
2. 제적 전 성적증명서 및 수료증명서
3. 기타 서류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제13조 (등록) ①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입학금과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등록자는 제적 처리 한다.

제14조 (학점등록) ① 6학기 등록을 필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 하지 못하여 수학을 계속하는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7항 1호」에 의거하여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 4. 1)

② 학점등록은 해당 학기 등록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의 2(학점교환) ①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원교 대학원 간에 석사학위과정 학점교환 제를 실시한다.(신설2012.07.01)

②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학점 교환제 실시 규정에 의거하여 이수한 학점은 인정 할 수 있다.(신설2012.07.01)

제15조 (논문등록) 삭제(2017.09.01)

제16조 (등록금 반환) 등록금의 반환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반환한다.(개정 2011. 4. 1)

제17조 (휴학) 입대, 질병 및 임신과 출산, 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이 불가능한 학생은 정한 기간 내에 휴학원을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입생은 병역 또

는 질병 및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학년도 1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1.)

제18조 (휴학기간) 일반휴학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군복무 휴학은 복무를 필할 때까지 한다. 단, 일반휴학은 사정에 의해 1회의 휴학연기를 할 수 있다.

제19조 (휴학 구비서류) 일반 휴학을 제외한 특별한 휴학일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특별한 사유일 경우 : 휴학사유서
2. 질병·사고일 경우 : 병원 진단서(개정 2014.9.1.)
3. 병역의무 : 입대(복무)확인서
4.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 임신과 출산 및 육아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첨부(신설 2017.1.1.)

제20조 (휴학명령) 학기 개강 후 5주 이내 등록을 못할 경우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등록인정) 등록을 필한 학생이 수업일수 1/3 이전에 휴학할 경우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대체 인정하며, 중간고사 이후의 휴학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입대 및 질병, 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휴학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복학) ①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기 초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교무과에 제출 한다.(개정 2014.9.1.)
② 복학원이나 휴학연기원의 제출이 없으면 계속 학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적처리한다.

제5장 수강신청 및 성적인정

제23조 (수강신청) ①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없이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수강신청은 교육과정편람에 의거하여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을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필수과목은 필히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수강 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강정정 기간에 정정하여야 한다.
- ④ 한 학기에 수강 할 수 있는 학점은 22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14.9.1.)

제23조의2(수강포기) ① 수강 신청한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에 해당 과목의 담당교수,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포기할 수 있다. (신설 2014.9.1.)
② 수강포기 후 다른 과목으로 추가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14.9.1.)
③ 수강포기 신청 없이 임의로 수강을 포기한 과목은 과락 (F)처리하며 성적에 반영한다.(신설 2014.9.1.)
④ 한 학기에 수강포기는 2과목이하로 제한한다.(신설 2014.9.1.)

제24조(재이수) ① C+이하과목은 재이수를 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4.9.1.)

- ② 항 삭제(개정 2014.9.1.)
- ③ 재이수 학점은 기 취득한 성적과 재이수 성적 중 높은 성적을 인정하여 성적표에 기재하고 평균평점 계산에 반영한다.(개정 2011.4.1., 개정 2014.9.1.)

제25조 (중복수강 금지) 동일 명칭의 교과목은 그 성적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만일, 중복하여 수강하였을 때에는 후에 받은 성적은 무효로 처리된다.(개정 2014.9.1.)

제26조 (동일시간 이중수강 금지) 동일시간 혹은 수강시간이 중첩될 경우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성적이 취득되더라도 두 과목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제27조 (성적평가) ① 성적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성적, 출석 및 과제물 등을 종합평가 한다.

② 신대원 재학생은 수업일수 3/4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의 학생출결관리규정의 인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7.9.1..)

제28조 (성적평가 등급) 학업성적 등급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등급	평점	점수
A+	4.50	95 ~ 100
A0	4.00	90 ~ 94
B+	3.50	85 ~ 89
B0	3.00	80 ~ 84
C+	2.50	75 ~ 79
C0	2.00	70 ~ 74
D+	1.50	65 ~ 69
D0	1.00	60 ~ 64
F	0.00	0 ~ 59
P	Pass	합격
NP	Nonpass	불합격

제29조 (성적무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

1.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의 해당과목 성적
2. 부정행위로 징계된 자의 해당학기 전 과목 성적
3. 미등록자가 응시하여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
4.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과목 성적
5. 기타 적법한 절차 없이 취득한 성적

제30조 (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시험기간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 추가시험 신청서를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받은 학생에게 한하여 성적취득은 B+이하로 한다.

제31조 (성적이의 신청) 취득학점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기 초 지정 기간 내에 성적이의 신청하여 성적을 재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제32조 (성적 정정) 성적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경우, 성적평가에서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와 기타 행정상의 착오로 인한 사항은 정정 할 수 있다.

제6장 이수과목·취득학점·졸업시험

제33조 (이수과목) 본 신대원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9.1.)

제34조 (취득학점) ① 본 신대원 학생은 전공필수 60학점, 전공선택 30학점, 계 9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② 복학생은 복학 당해 학년의 전공필수, 전공선택 학점을 준용한다.
- ③ 재학생은 매 학기 10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며 동일 학년 1, 2학기 연속으로 10학점 미만을 취득할 경우,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다.
- ④ 1, 2학기 연속으로 10학점 미만을 받더라도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된다.(개정 2017.9.1.)
- ⑤ 최종(졸업)학기에는 최저 이수학점을 6학점으로 한다.

제34조의 2(타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본교와 신학적 정체성이 일치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동일한 교과목에 한해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6.9.1.)

제35조 (학위수여평점) 신대원 학생이 취득한 전 과목의 학점 평균 평점이 C(2.0)이상일 때 학위를 수여한다.

제36조 (선수 및 예비필수 과목) 예비필수과목(헬라어)은 공개강좌 및 교과과정(히브리어)에서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고, 과락자는 졸업전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미취득자는 졸업할 수 없다.(개정 2014.9.1.)

제37조 (수료인정학점)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1)

제 1학년 32학점 이상

제 2학년 64학점 이상

제 3학년 90학점 이상

제38조 (졸업고사) ① 졸업시험은 2학년부터 응시할 수 있다.

- ② 시험일시 및 시험과목은 대학원위원회에서 2개월 전에 정하여 공지한다.
- ③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졸업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개정 2017.9.1.)
- ⑤ 졸업고사를 소논문 제출 등으로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1. 3.1.>

제7장 졸업에 관한 사항

제39조 (졸업요건) 신대원 학생의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1. 6회 이상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2.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90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7.01.01)
(단, 필수과목 중 한 과목일지라도 미취득 시에는 졸업이 불가능하다.)
3. 성경고전어 (히브리어, 헬라어)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4. 졸업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개정 2017.01.01)
5. 실천목회에 통과하여야 한다.
6. “삭제” <개정 2021.3.1>

제8장 학위 논문(삭제2017.1.1.)

제9장 학위 수여

제63조 (학위수여) 본 신대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졸업시험(성경고사 포함)에 합격한 자에게는 목회학석사(M.Div.) 학위를 수여한다.(개정2017.01.01)

제64조 (학위기) 본 신학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기 양식은 별지와 같다.
(별지 개정 2022.2.1.)

제10장 보 칙

제65조 (준용사항) 세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대학원 통합학칙 및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 (내규 등) 세칙이 위임한 사항이나 신대원 특성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신대원에서 별도의 내규 및 지침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 본 학칙 시행세칙은 대학원 통합학칙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며 200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세칙으로 신대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구 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 (시행일)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1.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세칙으로 변경된 교과과정에 의한 졸업학점은 2017년도 1,2학년 부터 적용하며 2017년도 3학년 학생은 이전 세칙에 의거 100학점으로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 시행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개정학칙 시행내규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적용한다. 다만, 34조 ①항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본 개정학칙 시행내규는 2019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본 개정학칙 시행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본 개정학칙 시행내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개정 2022.2.1.)

석(목) 제 호

학 위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전공)목회학 석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목회학석사(영문학위명)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
함.

년 월 일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 (학위)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목회학석사 학위를 수여함.

대신대학교 총장 (학위) ○○○ (인)

학위등록번호: 대신대 ○○○○석(목)○○○호